

<의안번호 제2006 - 67호>

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1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1. 22.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64조 ,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<총괄>

기 금 명	2006년말 현 재 액	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7년도말 예 상 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6 개	2,308,515	242,929	80,413	162,516	2,471,031
식품진흥기금	11,989	24,300	20,900	3,400	15,389
아름예술제진흥기금	400,000	48,400	18,400	30,000	430,000
체육진흥기금	28,787	2,036	0	2,036	30,823
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384,312	63,800	22,000	41,800	426,112
노인복지기금	952,502	85,280	0	85,280	1,037,782
여성발전기금	530,925	19,113	19,113	0	530,925

4. 검토의견

▣ 종합민원실 (p4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6년말 현 재 액	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7년도말 예상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식품진흥기금	11,989	24,300	20,900	3,400	15,389

- 식품업체·업소의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수입재원은 과징금, 출연금,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지출은 매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2006년 말 현재 11,989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, 2007년도 수입계획은 24,300천원(과징금 15,000천원, 도비보조금 9,000천원, 기금운용이자 300천원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,900천원(도비보조 “손 씻는 시설” 지원 9,000천원, 모범·전통음식점 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 11,900천원)이 지원 되며, 집행잔액 15,389천원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검토됨.
- 우수업소지원,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수입금액 범위내의 집행계획으로, 기금운용 지원대상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